

투자 위험 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신한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신한지수연계증권투자신탁KSE-24호[ELS-파생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한지수연계증권투자신탁KSE-24호[ELS-파생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신한지수연계증권투자신탁KSE-24호[ELS-파생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신한자산운용(주)**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우리은행 등)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www.shinhanfund.com)의 인터넷홈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2024년 05월 14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24년 05월 19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모집 또는 매출총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7. 모집(매출)기간(판매기간) **2024년05월20일-2024년05월31일**
※ 투자자숙려제도와 청약철회제도의 적용 여부에 따라 모집기간이 달라집니다.
※ 숙려기간(2영업일) 이후, 최종투자여부를 확정하여야 가입이 되며, 최종투자여부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가입이 취소됩니다.
※ 본 상품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서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요청을 하실 수 있으며,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에 따른 금전 등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권 미적용에 동의(즉시운용에 동의)한 고객에게는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www.shinhanfund.com)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이 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행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의미하지 않으며, 기대수익률은 확률에 의한 것으로 정해진 모든 조건이 우호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만 실현되는 수익률입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결합증권의 성과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투자결정하시기 바랍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이 집합투자기구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정한 별도의 자격요건이 있는 자(펀드투자상담사(2010년 2월 4일 이전 자격취득자의 경우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자격과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자격을 갖춘 자))만이 투자 권유를 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이 투자신탁은 설정 이후에는 취소요청에 의한 원금반환을 할 수 없고, 설정 이후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중도해지를 해야하며, 중도해지 수수료도 부과되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12.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원금보장 대상이 아니며, 매우 높은 위험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안전한 상품이 아닙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3.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파생결합증권은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한 회사와 직접 거래하므로 유동성이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신탁계약기간 종료 이전에 환매할 경우, 환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4. 이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서, 상품의 구조가 복잡하고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 숙려제도 안내

투자자 숙려제도 안내

▣ 이 상품은 파생결합증권에 투자되는 상품으로 운용방법과 구조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며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숙려 후 최종투자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7호에 따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서 개인인 일반투자자에게 "숙려기간" 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이 상품의 운용방법과 구조에 대하여 충분히 숙려 후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 숙려제도란?

- 적용대상자: 개인인 일반투자자
- 투자자에게 권유한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과정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이하 "청약등"이라 한다)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으로 청약일(불포함)로부터 2영업일 부여
- 적용방식: 모집기간 중 투자자가 청약을 신청한 날(불포함)부터 2영업일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
- 숙려기간 경과 후 익영업일(청약일 불포함 3영업일)에 판매회사는 유선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 취소요청을 하거나 혹은 "무응답", "부재중"에 대해서는 자동신규 취소해서 자금 반환

[투자설명서 목차]

● 요약 정보 - 간이투자설명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및 전환 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용어정리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24.05.14

신한지수연계증권투자신탁KSE-24호[ELS-파생형] [펀드코드 : EB820]

투자 위험 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신한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이 투자신탁은 [파생결합증권]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합니다.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의 90%이상을 KOSPI200과 S&P500과 EUROSTOXX50의 변동과 연계되는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함으로써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에 따라 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시장 위험, 파생결합증권 신용위험, 권리내용 변경 위험, 파생결합증권 유동성위험과 높은 환매수수료 및 중도 환매 시 저평가위험, 계약조건 변경 위험과 강제 조기 청산 위험, 파생결합증권 별 수익률 상이 위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신한지수연계증권투자신탁KSE-24호[ELS-파생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파생결합증권]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1) 기본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유동성자산을 제외하고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KOSPI200과 S&P500과 EUROSTOXX50]의 가격변동에 연계된 매 [6개월]단위로 조기상환조건이 내재된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여 자본소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상기 기본 운용전략 외에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만기 및 일정

구 분			일 정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			KOSPI200, S&P500, EUROSTOXX50				
파생결합증권 투자기간 주4)			3년 1개월 (단, 6개월 단위로 자동조기상환 조건 충족 시 자동조기상환)				
모집기간			청약철회권 적용 고객	2024년 05월 20일(월) ~ 2024년 05월 28일(화)			
			청약철회권 미적용 등의 고객	2024년 05월 29일(수) ~ 2024년 05월 31일(금)			
투자자 숙려기간			모집기간 중 투자자가 청약을 신청한 날(불포함)부터 2영업일				
설정일			2024년 06월 10일(월)		최초 기초자산가격 결정일	2024년 06월 10일(월) 증가	
자동 조기 상환 및 만기 상환	외 차		평 가 일		상 환 일	손익률 (세전)	비 고
	1	6 개월	2024년 12월 05일 (목)		2024년 12월 10일 (화)	2.90% 수준	6/6 한국유정(현충일)
	2	12 개월	2025년 06월 04일 (수)		2025년 06월 10일 (화)	5.80% 수준	
	3	18 개월	2025년 12월 05일 (금)		2025년 12월 10일 (수)	8.70% 수준	
	4	24 개월	2026년 06월 05일 (금)		2026년 06월 10일 (수)	11.60% 수준	
	5	30 개월	2026년 12월 07일 (월)		2026년 12월 10일 (목)	14.50% 수준	
	만기	36 개월	2027년 06월 07일(월)		2027년 06월 10일 (목)	17.40% 수준	만기상환일

※ 상기 수익률은 자동조기상환 및 만기상환조건 충족 시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가격 수준에 따른 예시수익률이며, 확정된 수익률은 아닙니다.

※ 표시된 수익률은 세전 수익률이며, 선취판매수수료 공제 전 고객납입원금이 기준입니다.

주1) 수익률(세전)은 예상 수익률로서 실제 수익률과는 환매 수수료, 이자 지급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2) 최초 기초자산가격 결정일,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만기평가일에 해당 기초자산의 거래소 한 곳이라도 영업일이 아닌 경우, 모든 기초자산의 거래소가 모두 영업일이 되는 날까지顺延. 이 경우 평가일이顺延됨에 따라 파생결합증권 대금지급일도顺延. 또한, 대금지급일이 신탁업자 및 해당 판매사 영업일이 아닌 경우顺延

주3) 또한, 파생결합증권 대금지급일이 변경되는 경우 펀드의 상환일도顺延하여 변경함

주4) 투자기간은 편입된 파생결합증권의 만기를 의미합니다. 다만 집합투자계약상 신탁계약기간은 상환일이 불가피하게 연장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상기 투자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투자자 숙려제도 대상 고객의 경우 숙려기간(2영업일) 이후, 최종투자여부를 확정하여야 가입이 되며, 최종투자여부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가입이 취소됩니다.

※ 본 상품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서 체결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권 미적용에 동의(즉시운용에 동의)한 고객에게는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파생결합증권의 상환구조

상환구분	기간	상환조건	손익률(세전)
자동조기상환	6개월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가격(종가)이 모두 최초 기초자산가격 대비 85% 이상 인 경우	2.90% 수준
	12개월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가격(종가)이 모두 최초 기초자산가격 대비 85% 이상 인 경우	5.80% 수준
	18개월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가격(종가)이 모두 최초 기초자산가격 대비 85% 이상 인 경우	8.70% 수준
	24개월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가격(종가)이 모두 최초 기초자산가격 대비 80% 이상 인 경우	11.60% 수준
	30개월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가격(종가)이 모두 최초 기초자산가격 대비 75% 이상 인 경우	14.50% 수준
만기상환	36개월	(6) 만기평가일에 각 기초자산가격(종가)이 모두 최초 기초자산가격 대비 65% 이상 인 경우	17.40% 수준
	36개월	(7)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 중 어느 한 기초자산이라도 기초자산가격(종가)이 최초 기초자산가격 대비 65% 미만 인 경우 → 원금손실 (원금 손실률 = 기초자산 중 기초자산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한 기초자산(기준종목)의 기초자산가격 기준 하락률 수준으로 원금손실 발생) (최대 원금 손실률 : -100%)	-35% ~ -100% 수준

※ 상기 자동조기상환 및 만기상환을 위한 기간은 최초 기초자산 가격 결정일로부터 매 기간별 해당일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기초자산가격 결정일 또는 평가일은 해당 거래소 동시 영업일이 아닌 경우 순연됨

※ 기초자산가격 기준 하락률 : $\{(\text{만기 평가일 기초자산가격} / \text{최초 기초자산가격}) - 1\} \times 100(\%)$

※ 원금은 선취판매수수료를 공제하기 전에 투자자가 입금한 금액을 말합니다.

※ 상기 수익률은 자동조기상환 및 만기수익상환 조건 충족 시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가격 수준에 따른 예시수익률이며, 확정된 수익률은 아닙니다.

※ 표시된 수익률은 세전 수익률이며, 선취판매수수료 공제 전 고객납입원금이 기준입니다.

■ 파생결합증권의 발행회사

발행사명	신용등급			기준일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KB증권	AA+	AA+	AA+	2024.04.18	2024.04.09	2024.04.09
미래에셋증권	AA	AA	AA	2024.04.03	2024.01.05	2024.04.04
유안타증권	AA-	AA-	AA-	2024.01.30	2023.11.30	2024.03.25
교보증권	AA-	AA-	AA-	2024.04.12	2024.03.26	2024.03.26

· 파생결합증권 발행사 신용사건 발생 시 투자원금 전부 또는 일부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파생결합증권 발행사 신용등급은 자료 작성일 현재 국내신용평가사 기준이며, 향후 신용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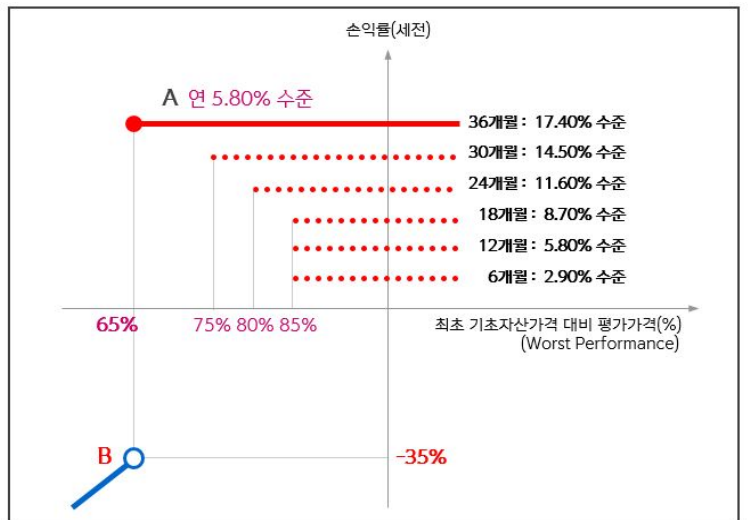
· 신용등급 하락에 따라 투자원금의 100%까지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파생결합증권의 손익구조

쿠폰(세전)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
연 5.80% 수준	KOSPI200, S&P500, EUROSTOXX50

자동조기상환 및 만기수익상환 조건은
6개월 단위로 85-85-85-80-75-65 로 조정됨

기간	자동조기상환 및 만기수익상환 조건
6개월	85%
12개월	85%
18개월	85%
24개월	80%
30개월	75%
36개월	65%



A : 자동조기상환 및 만기수익상환의 경우

B : 자동조기상환되지 않고, 만기수익상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최대 원금 손실률: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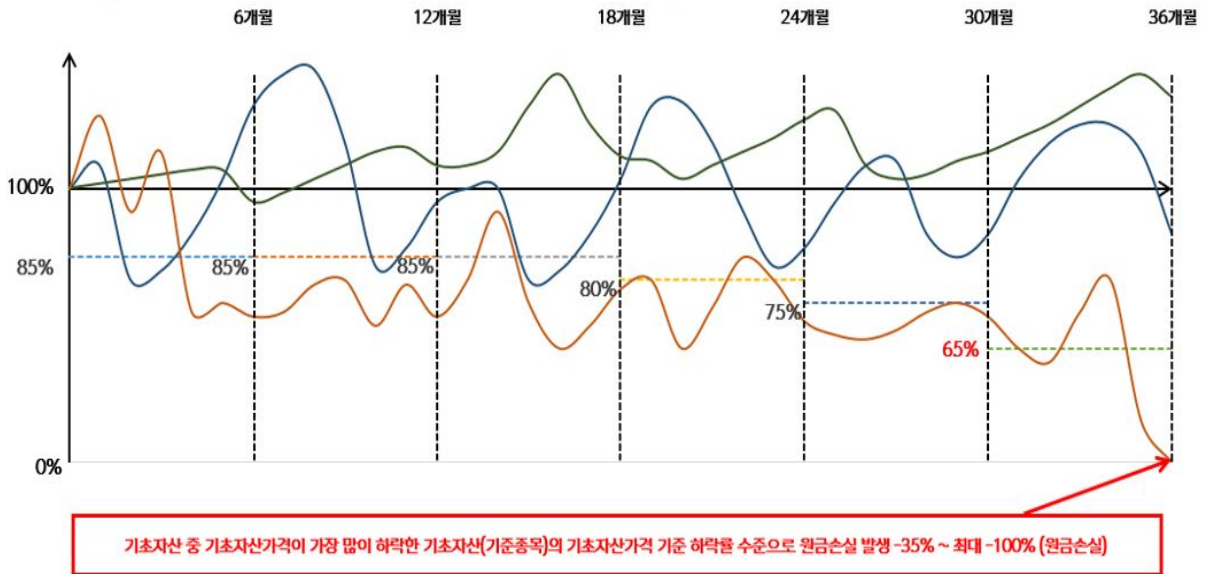
※ 상기 수익률은 자동조기상환 및 만기수익상환 조건 충족 시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가격 수준에 따른 예시수익률이며, 확정된 수익률은 아닙니다.

※ 표시된 수익률은 세전 수익률이며, 선취판매수수료 공제 전 고객납입원금이 기준입니다.

* 위 수익률은 주요투자대상인 파생결합증권(ELS)의 수익률이며, 실제 펀드의 수익률은 유동성, 기타비용 등으로 인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파생결합증권의 특성과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조기상환이 되지 않고,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 중 어느 한 기초자산이라도 기초자산가격(종가)이 최초 기초자산가격 대비 65% 미만인 경우



※ 기초자산가격 기준 하락률 : $\{(\text{만기 평가일 기초자산가격} / \text{최초 기초자산가격}) - 1\} \times 100(\%)$

분류

투자신탁, 증권형(ELS-파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단위형, 종류형,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투자비용

구분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연)보수 및 비용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최초 설정일로부터 6개월 까지	수수료선취 - 오프라인(A1)	납입금액의 0.80% 이내	0.2870	없음	0.8800	0.2870	95	95	95	-	-
	수수료선취 - 온라인(A-e)	납입금액의 0.60% 이내	0.2870	없음	0.5600	0.2870	75	75	75	-	-

- 설정일로부터 6개월 경과후 총보수 연(%): [종류A1 0.003%], [종류A-e 0.003%]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지구 보수 포함))을 의미합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 경과후 부터 총보수는 연기준 [종류 A1 0.003%], [종류A-e 0.003%]으로 감소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8%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A-e클래스(온라인투자자 전용)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가 A1클래스보다 적어 비용이 그만큼 절감됩니다. 이에 따라 A-e, A1 모두 동일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A-e클래스의 수익률이 A1클래스의 수익률보다 절감된 비용수준만큼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주3) 해당 예시는 펀드가 만기상환되는 것을 가정하여 계산한 것으로 조기상환이 되는 경우 해당 기간까지의 보수 및 비용이 발생합니다

(주4) 종류형 집합투자지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지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6) 총 보수 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자투자신탁의 경우 해당 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포함)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설정 전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신한지수연계증권투자신탁KSE-24호[ELS-파생형]

(2024.04.30 현재)

운용전문 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해외-파생형)				운용 경력 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서병욱	1973	책임운용역	61개	1,703억원	12.95%	17.29%	9.27%	13.27%	16년 9개월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구조화운용센터에서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지정하지 않습니다.상기운용역 부재시 등의 경우 구조화운용센터내 다른 운용역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 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위의 수치 산정 시 모자형구조의 투자신탁의 경우 모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 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의미하지 않으며, 기대수익률은 확률에 의한 것으로 정해진 모든 조건이 우호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만 실현되는 수익률입니다. - 이 투자신탁은 설정 이후에는 취소요청에 의한 원금반환을 할 수 없고, 설정 이후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중도해지를 해야하며, 중도해지 수수료도 부과되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원금보장대상이 아니며, 매우 높은 위험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안전한 상품이 아닙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서, 파생상품 등의 편입으로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인인 일반투자자는 판매회사에 판매과정을 녹취한 파일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이하 "청약등"이라 한다)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하 "숙려기간"이라 한다)에 대해 안내받아야 합니다. 판매회사는 투자권유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의 청약 등을 한 투자자에게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파생결합증권은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한 회사와 직접 거래하므로 유동성이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신탁계약기간 종료 이전에 환매할 경우, 환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숙려제도 안내 ▣ 이 상품은 파생결합증권에 투자되는 상품으로 운용방법과 구조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며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숙려 후 최종투자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7호에 따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서 개인인 일반투자자에게 "숙려기간" 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이 상품의 운용방법과 구조에 대하여 충분히 숙려 후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 숙려제란? - 적용대상자: 개인인 일반투자자									

- 투자자에게 권유한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과정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이하 "청약등"이라 한다)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으로 청약일(불포함)로부터 2영업일 부여
- 적용방식: 모집기간 중 투자자가 청약을 신청한 날(불포함)부터 2영업일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
- 숙려기간 경과 후 익영업일(청약일 불포함 3영업일)에 판매회사는 유선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 취소요청을 하거나 혹은 "무응답", "부재중"에 대해서는 자동신규 취소해서 자금 반환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를 참고 바랍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주요 투자 위험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기초자산 관련 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 정치, 경제상황, 정부의 정책 변화, 세제의 변경 등이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은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며, 해당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가격 변동에 의해 투자원금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결합증권 신용위험	파생결합증권의 거래는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한 회사와의 직접적인 거래로 발행회사의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투자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이 추구하는 투자전략이 실현될 수 없으며 원금의 100%까지 손실이 가능합니다. 발행회사의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투자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금의 100%까지도 손실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발행사의 홈페이지 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리내용 변경 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인 파생결합증권의 조건은 기초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합병, 증자, 감자, 주식소각 등 기초자산의 본질가치의 변경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에서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종목 중 전부 또는 일부의 거래가 중단 또는 정지되는 경우, 외환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거래중지사태 등이 발생하여 위험회피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제한이 따르는 경우, 기타 국내외 금융시장의 관행에 따라 본 증권의 권리내용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관행에 따라 발행자와 집합투자업자의 합의를 통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파생결합증권의 권리내용 조정사유 및 조정방법 등은 각 파생결합증권 발행회사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파생결합증권 유동성위험과 높은 환매수수 료 및 중도 환매 시 저평가위험	투자신탁재산으로 편입된 파생결합증권은 발행회사와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적으며, 중도 환매 요청시 편입된 파생결합증권의 실제 중도 매각금액과 이론 가격인 펀드 기준가격으로 계산한 금액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잔여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펀드의 환매수수료는 다른 일반펀드 보다 높게 책정됩니다. (환매수수료는 전액 펀드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만기이전에 중도 환매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 매각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며, 중도 매각에 따른 가격 손실 및 높은 환매수수료로 인하여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초자산의 최대하락률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파생결합증권의 만기일 전에 평가되는 금액은 내재변동성, 기초자산의 가격, 금리, 만기까지 잔존기간 등 몇 가지 변수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따라서 투자신탁 만기일 이전에 중도환매를 요청하는 투자자의 경우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자가 적용하는 중도상환금액은 투자신탁에서의 평가가격보다 낮을 수 있고, 잔존고객의 경우 환매에 따라 발행사의 가격과 평가가격의 차이에 따라 만기시(자동조기상환시) 수익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조건 변경 위험과 강제 조 기 청산 위험	기초자산의 거래중지, 가격산출 중단 또는 상장폐지, 관련 법규의 변경, 천재지변, 전시, 사변, 금융/외환시장의 중대한 교란, 발행회사의 휴/폐업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 예상치 못한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기준일, 행사가격, 지급일, 상환조건 및 상환금액)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원금에 현저히 미달되는 금액으로 강제 조기 청산될 수도 있습니다.
	파생결합증권 별 수익률 상이 위험	이 투자신탁은 복수의 발행사에서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합니다. 각각의 파생결합증권의 쿠폰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수익조건 달성 시 제시한 수익률은 각각의 파생결합증권의 평균수익률로 표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제시 쿠폰이 상대적으로 높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 부도 시, 투자원본의 손실 뿐 아니라 부도가 발생하지 않은 발행사의 파생결합증권이 투자 신탁에서 최초 제시한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로 상환될 수 있습니다.
	고난도 금융투 자상품 투자위 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서, 파생상품 등의 편입으로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입방법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환매방법	가. 17시 이전: 제4영업일(D+3)의 기준가격으로 제5영업일(D+4)에 지급 나. 17시 경과 후: 제5영업일(D+4)의 기준가격으로 제6영업일(D+5)에 지급	
환매 수수료	가. 6개월 미만 환매시 : 환매금액의 7% 나. 6개월 경과일로부터 환매시 : 환매금액의 5%	
기준 가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shinhanfund.com),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인터넷홈페이지
과세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 등 과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 및 법인 15.4%)을 부담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집합투자 업자	신한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767-5777 / 인터넷 홈페이지: www.shinhanfund.com)	
모집(판매)기 간	2024년05월20일-2024년05월31일 ※ 투자자숙려제도와 청약철회제도의 적용 여부에 따라 모집기간이 달라집니다. ※ 숙려기간(2영업일) 이후, 최종투자여부를 확정하여야 가입이 되며, 최종투자여부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가입이 취소됩니다. ※ 본 상품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서 제 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요청을 하실 수 있으며,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에 따른 금전 등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권 미적용에 동의(즉시운용에 동의)한 고객에게는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모집(매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모집(매출) 총액 : 10조좌) 주1) 모집(판매)된 금액이 3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력발생일	2024년 05월 19일	존속 기간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 1개월간]. 다만, 투자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하며, 파생결합증권이 자동조기상환 및 만기상환 되는 경우, 파생결합증권의 자동조기상환 또는 만기상환 시 기초자산 대상 거래소의 휴장 또는 천재지변, 전시, 사변, 금융/외환시장의 중대한 교란 등으로 평가일 및 상환대금 지급일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해당 상환대금이 투자신탁에 입금되는 날까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shinhanfund.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 기구 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 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집합투자 기구 의 종류	판매 수수료 수수료선취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 기구 의 종류	판매 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shinhanfund.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shinhanfund.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shinhanfund.com)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종류)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신한지수연계증권투자신탁KSE-24호[ELS-파생형]	EB820
수수료선취-오프라인(종류A1)	EB822
수수료선취-온라인(종류A-e)	EB825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형(ELS-파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단위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불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 종류형(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해당여부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지칭합니다.

3. 모집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10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1좌=1원, 펀드설정일 기준) 단위로 모집합니다.

주1) 모집(판매)된 금액이 3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주3) 이 집합투자기구는 단위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최초설정 후 추가설정을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계약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분배금의 범위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의 모집기간(판매기간) 종료일까지 수익증권을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기 모집 가능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모집기간 : 2024년05월20일-2024년05월31일

※ 투자자숙려제도와 청약철회제도의 적용 여부에 따라 모집기간이 달라집니다.

※ 숙려기간(2영업일) 이후, 최종투자여부를 확정하여야 가입이 되며, 최종투자여부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가입이 취소됩니다.

※ 본 상품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서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요청을 하실 수 있으며,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에 따른 금전 등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권 미적용에 동의(즉시운용에 동의)한 고객에게는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모집장소 : 판매회사(우리은행 등) 본·지점

주1) 판매사가 추가되거나 제외될 수 있으며,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www.shinhanfund.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11. 매입, 환매 및 전환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모집(판매) 예정기간은 판매회사의 사정에 따라 단축될 수 있습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종류)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신한지수연계증권투자신탁KSE-24호[ELS-파생형]	EB820
수수료선취-오프라인(종류A1)	EB822
수수료선취-온라인(종류A-e)	EB825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24.06.10	설정 예정

주1) 상기 집합투자기구의 연혁은 최초 설정일을 포함하여 최근 5년 동안의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 1개월간]으로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합니다. 단, 파생결합증권이 사전에 정한 조건에 충족되어 자동조기상환 및 만기상환 되는 경우, 파생결합증권의 자동조기상환 또는 만기상환 시 기초자산 대상 거래소의 휴장 또는 천재지변, 전시, 사변, 금융/외환시장의 중대한 교란 등으로 평가일 및 상환대금 지급일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해당 상환대금이 투자신탁에 입금되는 날까지를 신탁계약기간으로 합니다.

(주1) 법령 또는 신탁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신한자산운용(주)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투자증권타워 18층 (대표전화 : 02-767-5777, 홈페이지 : www.shinhanfund.com)

주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2024.04.30. 현재)

가.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해외-파생형)				운용 경력 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1973	책임운용역	61개	1,703억원	12.95%	17.29%	9.27%	13.27%	16년 9개월
서병욱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KAIST 경영대학원 석사 - 동원BNP투신 주식운용팀(01.07-03.03) - 동원투신운용 시스템운용팀(03.04-05.05) - 조흥투신운용 대안운용팀(05.05-06.03) - SH자산운용 투자공학팀(06.03-08.12) - 신한BNP 파riba 자산운용 자산배분PS팀(09.05-10.05) - 신한BNP 파riba 자산운용 대안운용팀(10.05-11.03) - 신한BNP 파riba 자산운용 구조화파생팀 팀장(11.03-20.01) - 신한BNP파riba자산운용 퀀트/구조화파생운용본부 부분부장(20.01-21.01) - 신한자산운용 퀀트/구조화파생운용본부 부분부장(21.01-21.07) - 신한자산운용 퀀트/구조화파생운용본부 구조화파생실 실장(21.07-22.03) - 신한자산운용 구조화운용센터 센터장(22.04-현재)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구조화운용센터에서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지정하지 않습니다. 상기운용역 부재시 등의 경우 구조화운용센터내 다른 운용역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위의 수치 산정 시 모자형구조의 투자신탁의 경우 모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2024.04.30. 현재): 해당사항 없음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형(ELS-파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단위형, 종류형,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주)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구조 등 주요 사항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한지수연계증권투자신탁KSE-24호[ELS-파생형]
▼
신한지수연계증권투자신탁KSE-24호[ELS-파생형](종류A1) (수수료선취-오프라인)
신한지수연계증권투자신탁KSE-24호[ELS-파생형](종류A-e) (수수료선취-온라인)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수수료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종류별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1)	제한없음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2) 종류별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선 취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파생결합증권]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의 90% 이상을 KOSPI200과 S&P500과 EUROTOXX50의 변동과 연계되는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함으로써 지수의 변동에 따라 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 방법으로 운용합니다.

자산 유형	투자비율 (%) (투자신탁재산 총액 대비)	주요 내용
1. 파생결합증권	90% 이상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자산인 KOSPI200과 S&P500과 EUROTOXX50 (이하 “기초자산”이라 한다)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거래 가. 파생결합증권의 투자로 인한 최대손실규모가 해당 투자금액 이내인 구조의 파생결합증권 나. 다음과 같은 상환구조를 가지고 있는 파생결합증권 아래 *상환구조 참조
2.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3.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가 자신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경우 - 법 시행령 제34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 -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한도 및 제한의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집합투자규약 제16조 제1호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16조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7조 제2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상환구조

상환구분	기간	상환조건	손익률 (세전)
자동 조기 상환	6개월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가격(종가)이 모두 최초 기초자산가격 대비 85% 이상 인 경우	2.90% 수준
	12개월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가격(종가)이 모두 최초 기초자산가격 대비 85% 이상 인 경우	5.80% 수준
	18개월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가격(종가)이 모두 최초 기초자산가격 대비 85% 이상 인 경우	8.70% 수준
	24개월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가격(종가)이 모두 최초 기초자산가격 대비 80% 이상 인 경우	11.60% 수준
	30개월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가격(종가)이 모두 최초 기초자산가격 대비 75% 이상 인 경우	14.50% 수준
만기 상환	36개월	(6) 만기평가일에 각 기초자산가격(종가)이 모두 최초 기초자산가격 대비 65% 이상 인 경우	17.40% 수준
	36개월	(7)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 중 어느 한 기초자산이라도 기초자산가격(종가)이 최초 기초자산가격 대비 65% 미만 인 경우 → 원금손실 (원금 손실률 = 기초자산 중 기초자산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한 기초자산(기준종목)의 기초자산가격 기준 하락률 수준으로 원금손실 발생) (최대 원금 손실률 : -100%)	-35% ~ -100% 수준

※ 상기 자동조기상환 및 만기상환을 위한 기간은 최초 기초자산 가격 결정일로부터 매 기간별 해당일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기초자산가격 결정일 또는 평가일은 해당 거래소 동시 영업일이 아닌 경우顺延됨

※ 기초자산가격 기준 하락률 : $\{(\text{만기 평가일 기초자산가격} / \text{최초 기초자산가격}) - 1\} \times 100(\%)$

※ 원금은 선취판매수수료를 공제하기 전에 투자자가 입금한 금액을 말합니다.

※ 상기 수익률은 자동조기상환 및 만기수익상환 조건 충족 시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가격 수준에 따른 예시수익률이며, 확정된 수익률은 아닙니다.

※ 표시된 수익률은 세전 수익률이며, 선취판매수수료 공제 전 고객납입원금이 기준입니다.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 예외
이해관계인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환매조건부매수	
파생결합증권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한도초과	<투자한도 초과 예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계약 제 17조 제2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 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자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자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1) 기초자산의 변동에 연계하여 수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만기 및 일정>

구 분			일 정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			KOSPI200, S&P500, EUROSTOXX50			
파생결합증권 투자기간 (주4)			3년 1개월 (단, 6개월 단위로 자동조기상환 조건 충족 시 자동조기상환)			
모집기간			청약철회권 적용 고객	2024년 05월 20일(월) ~ 2024년 05월 28일(화)		
			청약철회권 미적용 등의 고객	2024년 05월 29일(수) ~ 2024년 05월 31일(금)		
투자자 숙려기간			모집기간 중 투자자가 청약을 신청한 날(불포함)부터 2영업일			
설정일			2024년 06월 10일(월)		최초 기초자산가격 결정일	2024년 06월 10일(월) 증가
자동 조기 상환 및 만기 상환	외 차		평 가 일	상 환 일	손익률 (세전)	비 고
	1	6 개월	2024년 12월 05일 (목)	2024년 12월 10일 (화)	2.90% 수준	6/6 한국유통(현충일)
	2	12 개월	2025년 06월 04일 (수)	2025년 06월 10일 (화)	5.80% 수준	
	3	18 개월	2025년 12월 05일 (금)	2025년 12월 10일 (수)	8.70% 수준	
	4	24 개월	2026년 06월 05일 (금)	2026년 06월 10일 (수)	11.60% 수준	
	5	30 개월	2026년 12월 07일 (월)	2026년 12월 10일 (목)	14.50% 수준	
	만기	36 개월	2027년 06월 07일(월)	2027년 06월 10일 (목)	17.40% 수준	만기상환일

※ 상기 수익률은 자동조기상환 및 만기수익상환 조건 충족 시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가격 수준에 따른 예시수익률이며, 확정된 수익률은 아닙니다.
※ 표시된 수익률은 세전 수익률이며, 선취판매수수료 공제 전 고객납입원금이 기준입니다.
주1) 수익률(세전)은 예상 수익률로서 실제 수익률과는 판매 수수료, 이자 지급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2) 최초 기초자산가격 결정일,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만기평가일에 해당 기초자산의 거래소 한 곳이라도 영업일이 아닌 경우, 모든 기초자산의 거래소가 모두 영업일이 되는 날까지顺延. 이 경우 평가일이顺延됨에 따라 파생결합증권 대금지급일도顺延. 또한, 대금지급일이 신탁업자 및 해당 판매사 영업일이 아닌 경우顺延
주3) 또한, 파생결합증권 대금지급일이 변경되는 경우 펀드의 상환일도顺延하여 변경함
주4) 투자기간은 편입된 파생결합증권의 만기를 의미합니다. 다만 집합투자계약상 신탁계약기간은 상환일이 불가피하게 연장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상기 투자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투자자 숙려제도 대상고객의 경우 숙려기간(2영업일) 이후, 최종투자여부를 확정하여야 가입이 되며, 최종투자여부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가입이 취소됩니다.
※ 본 상품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서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권 미적용에 동의(즉시운용에 동의)한 고객에게는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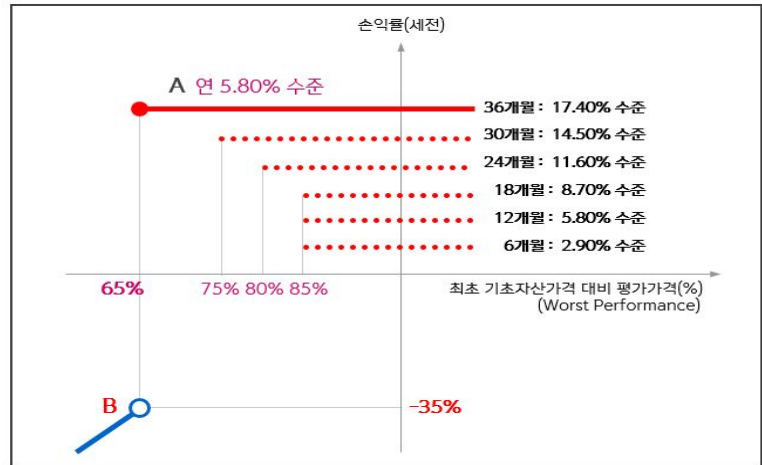
<파생결합증권의 손익 구조>

쿠폰 (세전)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
연 5.80% 수준	KOSPI200, S&P500, EUROSTOXX50

자동조기상환 및 만기수익상환 조건은

6개월 단위로 85-85-85-80-75-65 로 조정됨

기간	자동조기상환 및 만기수익상환 조건
6개월	85%
12개월	85%
18개월	85%
24개월	80%
30개월	75%
36개월	65%



A: 자동조기상환 및 만기수익상환의 경우

B: 자동조기상환 되지 않고, 만기수익상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최대 원금 손실률: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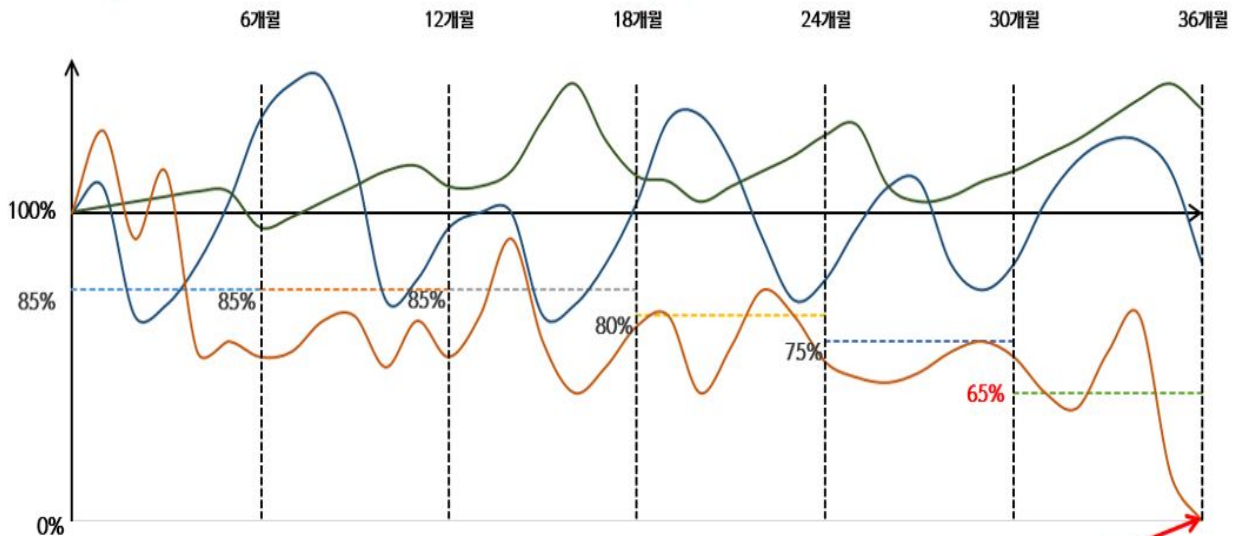
※ 상기 수익률은 자동조기상환 및 만기수익상환 조건 충족 시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가격 수준에 따른 예시수익률이며, 확정된 수익률은 아닙니다.

※ 표시된 수익률은 세전 수익률이며, 선취판매수수료 공제 전 고객납입원금이 기준입니다.

* 위 수익률은 주요투자대상인 파생결합증권(ELS)의 수익률이며, 실제 펀드의 수익률은 유동성, 기타비용 등으로 인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생결합증권의 특성과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조기상환이 되지 않고,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 중 어느 한 기초자산이라도 기초자산가격(종가)이 최초 기초자산가격 대비 65% 미만인 경우



기초자산 중 기초자산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한 기초자산(기준종목)의 기초자산가격 기준 하락률 수준으로 원금손실 발생 -35% ~ 최대 -100% (원금손실)

※ 기초자산가격 기준 하락률 : $\{(\text{만기 평가일 기초자산가격} / \text{최초 기초자산가격}) - 1\} \times 100(\%)$

<파생결합증권의 발행회사>

발행사명	신용등급			기준일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KB증권	AA+	AA+	AA+	2024.04.18	2024.04.09	2024.04.09
미래에셋증권	AA	AA	AA	2024.04.03	2024.01.05	2024.04.04
유안타증권	AA-	AA-	AA-	2024.01.30	2023.11.30	2024.03.25
교보증권	AA-	AA-	AA-	2024.04.12	2024.03.26	2024.03.26

- 파생결합증권 발행사 신용사건 발생 시 투자원금 전부 또는 일부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파생결합증권 발행사 신용등급은 자료 작성일 현재 국내신용평가사 기준이며, 향후 신용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하락에 따라 투자원금의 100%까지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파생결합증권의 관리조정 등

최초 기초자산가격(지수 또는 주식의 가격)결정일, 조기(만기)상환평가일 등 기초자산가격(지수 또는 주식의 가격)의 확정일이 필요한 날에 기초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 기초자산의 발행자 또는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파생결합증권의 발행회사”는 합리적인 상관례를 참조하여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와의 합의를 통해 각 기초자산에 대한 최초 기초자산가격(지수 또는 주식의 가격)결정일, 조기(만기)상환평가일, 최초 기초자산가격(지수 또는 주식의 가격), 조기(만기)상환평가일의 기초자산가격(지수 또는 주식의 가격), 조기(만기)상환일 또는 기타 지급일 등 투자신탁에 편입된 파생결합증권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의 변경은 상관행 및 관련법령이나 규정 등에서 제시하는 바를 최대한 반영하지만 이에 우선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조건의 변경은 원금에 현저히 미달되는 금액으로 강제 조기 청산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파생결합증권의 만기평가일에 가격제공자(거래소 등)가 당해 기초자산에 대하여 종가를 공표하지 않거나 기초자산의 매매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 것(거래정지, 기세상한가 및 기세하한가 등)으로 파생결합증권의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 2) 거래소의 기초자산 가격의 발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로 인하여 파생결합증권의 상환금액이 잘못 산정 지급된 경우
- 3)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상환일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외환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거래중지사태가 발생하여 파생결합증권의 발행회사가 본 파생결합증권과 관련한 위험회피거래(비거주자와의 모든 거래를 포함)를 수행함에 있어 제한이 따르는 경우
- 4) 파생결합증권 인수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해 본 파생결합증권의 권리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5) 관련법령의 변경, 천재지변, 전시, 사변, 발행회사의 휴/폐업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 파생결합증권의 권리내용 조정사유 및 조정방법 등은 각 파생결합증권 발행회사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위험관리

(1) 파생결합증권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 관리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사(거래상대방)를 4군데로 나누어 투자하여 거래상대방 위험을 분산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 거래상대방 별 파생결합증권 거래 금액은 펀드 자산총액의 30% 이하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2) 파생결합증권의 유동성위험 관리

이 투자신탁은 투자자의 환매청구 발생 시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회사에 중도 매각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으로 편입된 파생결합증권은 발행회사와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적으며, 중도 환매 요청 시 편입된 파생결합증권의 실제 중도 매각금액과 이론 가격인 펀드 기준가격으로 계산한 금액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잔존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환매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 때, 투자자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잔존자산의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처분하며 투자자에게 적시에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합니다.

다. 용어정리

■ 계산기관 : 파생결합증권의 중도 및 만기평가액 계산, 기준지수, 자동조기상환일지수 및 만기지수 조정 사유 발생시 조정가격 계산 및 기타 계약서 상에 명시된 업무 등(시장교란사유 포함)을 수행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이 경우 파생결합

증권을 발행한 발행회사 혹은 동 계산대리인의 지위를 승계한 회사를 의미합니다.

■ 시장교란사유 : 기초자산의 종가가 파생결합증권의 투자기간 중 확정되지 못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는 당해 기초자산 및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옵션종목의 거래의 제한 및 지연이 발생한 경우, 정상적으로 매매가격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증권시장이 예상치 않게 예정거래시간 이전 조기 폐장하는 경우, 해당거래소의 거래중단 등 혹은 기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해당 종목의 조정을 수반하는 시장교란사유들은 파생결합증권계약서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 종가(closing price) : 거래소영업일의 정규매매마감시간에 거래소가 발표하는 기초자산의 최종매매가격을 말합니다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관한 유의사항>

1.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여 손익을 사전에 확정하는 구조로 설계하였으나 그 손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2. 파생결합증권 등에 투자하여 취득하는 투자손익은 세금공제 전이며 투자신탁계약기간 종료시 지급하는 상환금등은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에서 얻어지는 파생결합증권 등의 투자손익과 수익자가 지급받는 상환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3. 투자신탁계약기간 중에 환매는 가능하나 환매할 경우에는 파생결합증권의 중도상환에 따른 가격하락 및 고율의 환매수수료 등으로 원금을 하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주요 내용
원본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재산 가치변동에 따라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 중에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 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의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기초자산 관련 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정책 변화, 세제의 변경 등이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은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며, 해당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가격 변동에 의해 투자원금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위험	보유하고 있는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 또는 계약상대방이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단기금융상품, 당해 계약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에 따라 채무 등의 지급유예, 채무증권 등이 주식과 같은 지분증권 또는 다른 종류의 새로운 채무증권(계약) 등으로의 전환, 변제기간이 장기간 유예되는 등의 방식으로 당초의 권리가 변경되어 투자원본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일반적으로 파생결합증권은 다른 증권과 달리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한 회사와 직접 거래를 하여야 하므로 유동성이 아주 낮습니다. 따라서 파생결합증권을 만기 이전에 중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 매각이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중도매각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 환매하는 경우에는 최초 설정일로부터 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기초자산가격에 연동한 수익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예상한 수익구조와는 다를 수 있으며, 환매수수료 징구 등으로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주요 내용
파생결합증권 신용위험	파생결합증권의 거래는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한 회사와의 직접적인 거래로 발행회사의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투자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이 추구하는 투자전략이 실현될 수 없으며 원금의 100%까지 손실이 가능합니다. 이 투자신탁에서 주된 투자대상인 파생결합증권의 발행회사는 투자설명서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수익구조 및 위험관리 가.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를 참고하십시오. 발행회사의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투자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금의 100%까지도 손실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발행사의 홈페이지 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소수의 발행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에 투

집중위험	자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거래상대방 집중위험에 노출됩니다.
권리내용 변경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인 파생결합증권의 조건은 기초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합병, 증자, 감자, 주식소각 등 기초자산의 본질가치의 변경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에서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종목 중 전부 또는 일부의 거래가 중단 또는 정지되는 경우, 외환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거래중지사태 등이 발생하여 위험회피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제한이 따르는 경우, 기타 국내외 금융시장의 관행에 따라 본 증권에의 권리내용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관행에 따라 발행자와 집합투자업자의 합의를 통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파생결합증권의 권리내용 조정사유 및 조정방법 등은 각 파생결합증권 발행회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파생결합증권 유동성위험과 높은 환매수수료 및 중도환매시 저평가위험	투자신탁재산으로 편입된 파생결합증권은 발행회사와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적으며, 중도 환매 요청시 편입된 파생결합증권의 실제 중도 매각금액과 이론 가격인 펀드 기준 가격으로 계산한 금액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잔여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펀드의 환매수수료는 다른 일반펀드 보다 높게 책정됩니다(환매수수료는 전액 펀드로 귀속됩니다). <u>따라서 만기이전에 중도 환매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 매각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며, 중도 매각에 따른 가격 손실 및 높은 환매수수료로 인하여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초자산의 최대하락률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u>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파생결합증권의 만기일 전에 평가되는 금액은 내재변동성, 기초자산의 가격, 금리 등 몇 가지 변수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따라서, 투자신탁 만기일 이전에 중도 환매를 요청하는 투자자의 경우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자가 적용하는 중도상환금액은 투자신탁에서의 평가가격보다 낮을 수 있고, 잔존고객의 경우 환매에 따라 발행사의 가격과 평가가격의 차이에 따라 만기시(자동조기상환시) 수익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조건 변경위험과 강제조기청산위험	<u>기초자산의 거래중지, 가격산출 중단 또는 상장폐지, 관련 법규의 변경, 천재지변, 전시, 사변, 금융/외환시장의 중대한 교란, 발행회사의 휴/폐업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 예상치 못한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기준일, 행사가격, 지급일, 상환조건 및 상환금액)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원금에 현저히 미달되는 금액으로 강제 조기 청산될 수도 있습니다.</u>
파생결합증권별 수익률 상이 위험	이 투자신탁은 복수의 발행사에서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합니다. 각각의 파생결합증권의 쿠폰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수익조건 달성 시 제시한 수익률은 각각의 파생결합증권의 평균수익률로 표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제시 쿠폰이 상대적으로 높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 부도 시, 투자원본의 손실 뿐 아니라 부도가 발생하지 않은 발행사의 파생결합증권이 투자신탁에서 최초 제시한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로 상환될 수 있습니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투자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서, 파생상품 등의 편입으로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분	주요 내용
운용실적위험	과거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의미하지 않으며, 기대수익률은 확률에 의한 것으로 사전에 정해진 모든 조건이 우호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만 실현되는 수익률입니다.
환매대금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로 인하여 실

환매대금 변동위험	제 환매대금은 환매청구일의 예상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환매청구일의 평가액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펀드규모위험	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적어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 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이 투자신탁은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 혹은 일정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증권시장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회사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4.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종가가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파생결합증권의 매입, 매도시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자가 임시공휴일, 시장교란사유 등으로 투자신탁의 만기 경과 시까지 지급을 미루는 경우 6. 기타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등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 환매가 제한될 위험이 있습니다.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3영업일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4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와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환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량환매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정가액산정위험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공정가액 산정 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자산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정가액이 시장가치와 정확히 상응한다고 보장할 수 없고 정확한 가치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권리행사위험	이 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서 보유증권에 대하여 재량권을 가지고 의결권이나 매수청구권 등 기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재산의 경제적 가

권리행사위험	치를 증대시키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 결과가 집합투자재산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거래중지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이 기초자산은 증권시장의 폐장, 휴장 또는 전산오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합병, 분할 등과 같은 기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증권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은 이 과정에서 평가가 중지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되어 다시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절하게 가치를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평가가 재개될때 일시에 가격이 반영됨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오류 위험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 판매회사 등 관련 기관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 1000분의1 미만인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가 산정 오류가 이러한 오차범위 이내에서 발생한 경우 당해 투자신탁을 청약하거나 환매한 투자자, 기존투자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경제적 가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률, 조세 및 규제 등 제도적 위험	국내 법률, 조세 및 규제 등의 정책이나 제도변경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용프로세스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적으로 투자목적 달성을 위하여 운용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집합투자업자에게 부여된 임의재량에 의한 투자활동의 결과는 집합투자업자의 능력에 좌우되고 특히 적절한 투자기회를 식별하고 성공적으로 투자전략을 이행하는 펀드매니저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펀드매니저는 당해 투자신탁뿐만 아니라 다수의 다른 투자신탁의 운용을 담당할 수 있고 또 한 담당 펀드매니저의 퇴직 등으로 신탁계약기간 도중에 담당펀드매니저가 변경될 위험이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된 이후 3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투자신탁의 원본손실가능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원본손실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집중위험 등이 있습니다. 해당 펀드를 각 위험 별로 평가한 후 총괄하여 원본손실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1등급, 높은 경우 2등급, 다소 높은 경우 3등급, 보통인 경우 4등급, 낮은 경우 5등급, 매우 낮은 경우 6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6개의 위험등급 중 1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설정된 이후 3년 경과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연간 수익률의 표준편차 또는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하게 되며 등급분류기준이 실제 수익률 변동성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험등급이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단, 실제 과거 수익률 변동성에 따른 위험등급의 변동은 상품에 내재되어있는 거래상대방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등 위험요인을 모두 반영하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신한자산운용(주) 자체 투자위험등급 기준 예시 >

위험등급	대상 펀드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가지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가지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최대 80%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가지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가지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 포함)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가지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가지는 집합투자기구

- 1) 고위험자산: 주식, 원자재,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관련된 기초자산으로 이루어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2) 중위험자산: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및 이와 관련된 기초자산으로 이루어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3) 저위험자산: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관련된 기초자산으로 이루어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4) 외환위험에 노출되는 해외투자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의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 및 투자국가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 5) 다른 집합투자기구 자산의 40%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주로 편입하고자 하는 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의 속성을 기초로 집합투자업자가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 6)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각 자집합투자기구의 각 모집합투자구별 편입비율을 고려하여 자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 7) 상기 명시된 위험등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 시장 및 신용위험 등 손실가능성을 고려하여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및 전환 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1)	제한없음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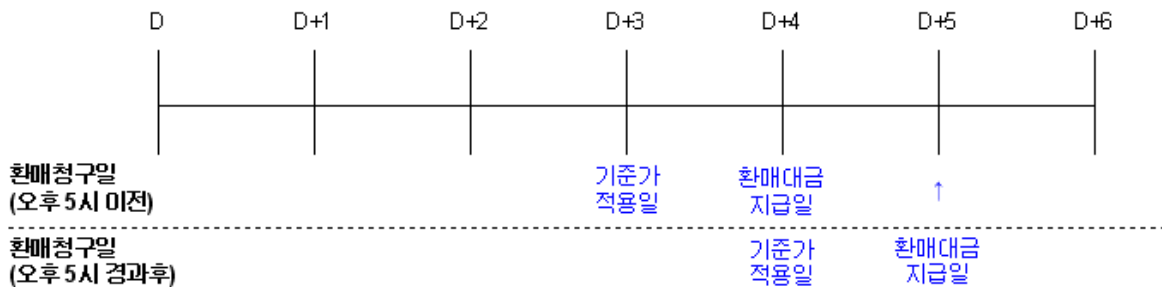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의 영업점을 통해 직접 환매하거나, 판매회사가 온라인 환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 환매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A.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5영업일(D+4)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B. 17시 경과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6영업일(D+5)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각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각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C. 판매회사가 해산·인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특정 만기가 있는 파생결합증권에 자산의 90% 이상을 투자하는 투자전략의 특성상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가. 6개월 미만 환매시 : 환매금액의 7%

나. 6개월 경과일로부터 환매시 : 환매금액의 5%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 ①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취소 또는 정정은 설정일 전 영업일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청구를 취소 또는 정정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 ② ①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숙려제도 적용 대상자'의 경우 숙려기간에도 매입청구한 수익증권에 대하여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 ③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 17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17시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각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증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

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3영업일 전일(17시 경과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제4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7조의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된 경우, 법 제237조와 시행령 제258조의 절차에 따라 환매할 수 있습니다.

※ 환매연기사유

- ①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증권시장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③ 환매를 청구 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회사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④ 그밖에 ①부터③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시행령 제259조의 절차에 따라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중도환매 가능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여부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 허용 (중도환매시 비용 발생)	중도환매 허용 (중도환매시 비용 발생하지 않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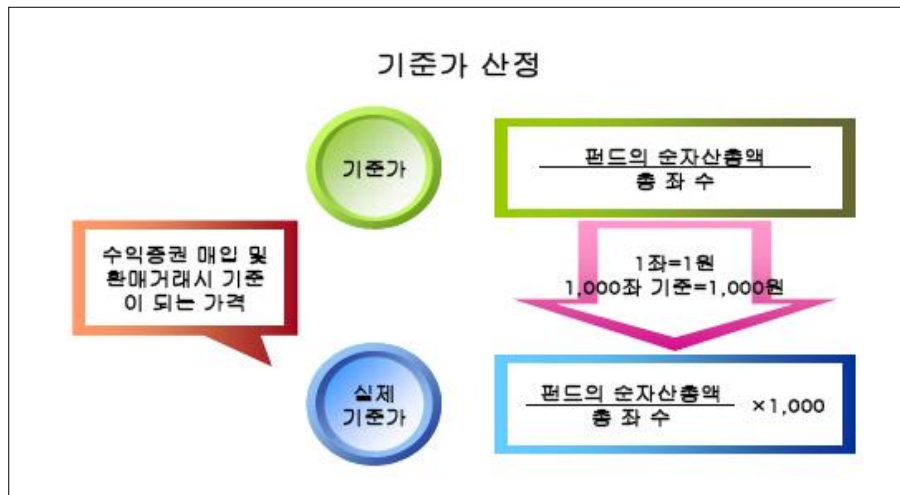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다만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 중에도 이자수익 등으로 투자신탁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집합투자업자(www.shinhanfund.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인터넷홈페이지

주1)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 가치가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원칙 :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구분	평가원칙
시가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증권지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함)에서 공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2.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공정가액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을 말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합니다.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자가 제공한 가격 가. 채권평가회사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다. 신용평가업자 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마.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자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4. 환율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시가(공정가액) 평가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구분		평가방법
1	파생결합증권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공정가액
2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상장 주식의 경우 전날의 가격)
3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외화표시자산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외국 채권평가회사 또는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4	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공표하는 가격 (해외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5	장외파생상품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단, 채권평가회사가 가격제공이 곤란한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6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외화표시자산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외국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7	비상장채권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권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8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9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상장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날의 가격)
10	외화표시자산의 평가시 한국원화로 환산하는 환율	평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증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 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로 한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2)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종류별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1)	제한없음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나.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지급시기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수수료선취-오프라인(A1)	납입금액의 0.800% 이내	-	가. 6개월 미만 환매시 : 환매금액의 7% 나. 6개월 경과일로부터 환매시 : 환매금액의 5%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600% 이내	-	

* 판매수수료는 위에 기재한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율은 판매회사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 (연간%)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보수	총 보수	(동종유형총 보수)	기타 비용	총보수 비용	합성총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증권거래 비용
최초 설정일로부터 6개월까지	수수료선취-오프라인(A1)	0.255	-	0.020	0.012	0.287	0.880	-	0.287	0.287	-
	수수료선취-온라인(A-e)	0.255	-	0.020	0.012	0.287	0.560	-	0.287	0.287	-
최초 설정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1)	0.001	-	0.001	0.001	0.003	0.880	-	0.003	0.003	-
	수수료선취-온라인(A-e)	0.001	-	0.001	0.001	0.003	0.560	-	0.003	0.003	-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후급					-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에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다음과 같은 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 비용 제외)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 내역은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감사보수,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해외거래예탁비용, 해외원천납부세액, 보관대리인보수, 법률자문비용, 부동산감

정평가보수 등

(주2)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 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국내주식매매수수료, 국내채권매매수수료, 장내파생매매수수료, 기타매매수수료, 콜종개수수료, swap 매매수수료, 대차거래비용(대차관련수수료), repo 거래비용(repo 수수료), 해외주식매매수수료, 해외채권매매수수료, 해외수익증권 매매수수료, 해외파생 등 매매수수료, 해외워런트 등 매매수수료 등

(주3) 기타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천원)
증권 거래비용	
금융비용	

(주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설정전인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추정할 수 없어 기재하되,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 연율화된 추정치 비율 산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주5) 총 보수.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6) 합성 총 보수.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자투자신탁의 경우 해당 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포함)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7)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키게 됩니다.	
-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단, 집합투자업자의 귀책사유인 경우 제외)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1,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 (단위:천원)

종류	구분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1)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95	95	95	-	-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95	95	95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75	75	75	-	-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75	75	75	-	-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8%, 총보수/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 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A-e클래스(온라인투자자 전용)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가 A1클래스보다 적어 비용이 그만큼 절감됩니다. 이에 따라 A-e, A1 모두 동일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A-e클래스의 수익률이 A1클래스의 수익률보다 절감된 비용수준만큼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주3) 해당 예시는 펀드가 만기상환되는 것을 가정하여 계산한 것으로 조기상환이 되는 경우 해당 기간까지의 보수 및 비용이 발생됩니다.

라. 보수 및 지급내역에 관한 사항

기준지표	보수 산정방식	한도 (%)	산출 주기	지급 시기	지급내역 (직전 회계연도 기준, %)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	-	-	-	-	-	-	-

※ 위의 표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65조 제1항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수취하는 투자신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이익분배금을 판매 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의 분배 유보는 2016년 4월 1일 이후에 결산·분배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해당 이익금의 분배 유보로 인한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기대 효과: 투자신탁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전부 환매 청구가 있을 때에 해당 환매청구 분에 대하여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과세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는 수익자별 보유 수익증권에 대해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과세시점을 환매시점까지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② 과세시점 지연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수익증권의 환매시점에 해당 수익증권의 보유기간 동안 유보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을 포함한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와 같이 과세시점 지연의 효과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경우 수익자별로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통하여 과세시점을 확정된 후 수익증권을 추가 매수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방법은 각 판매회사의 수익증권저축약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되므로 각 판매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3)수익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 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 및 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 (지방소득세 포함), 일반법인 15.4% (법인세 14%, 법인지방소득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
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
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법인세 14%, 법인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
게 됩니다.

※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 대상 금액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 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기 기재되어 있는 세금 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중도 해지 시 적용 기준 및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설정 전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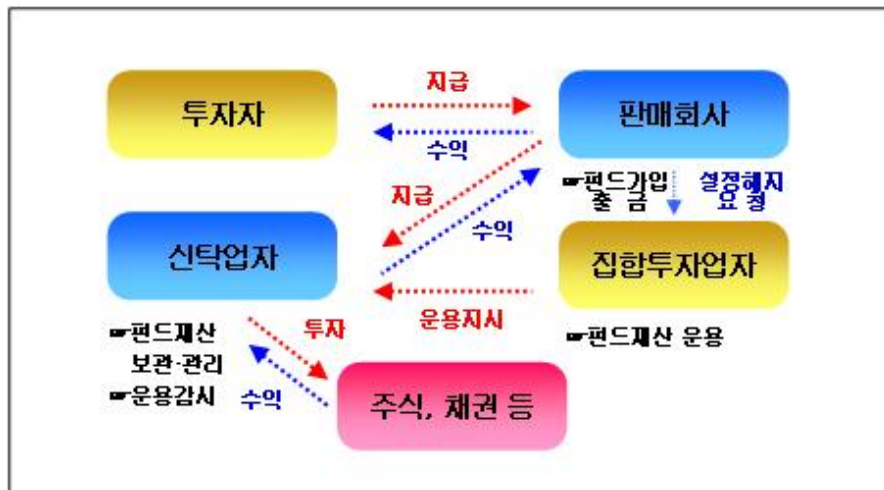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설정 전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설정 전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 사 명	신한자산운용(주)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투자증권타워 18층 (대표전화 : 02-767-5777, 홈페이지 : www.shinhanfund.com)
회 사 연 혁	2022.01 신한자산운용(주)이 신한대체투자운용(주) 흡수합병 2021.01 사명변경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주)→신한자산운용(주)) 2009.01 신한 비엔피 파리바 자산운용(주) 출범 (신한 비엔피 파리바 투자신탁운용(주)과 SH자산운용(주)의 합병) 2008.09 신한금융지주그룹, 비엔피 파리바 금융그룹 합작운용사 출범을 위한 MOU체결
자 본 금	887억원
주 요 주 주 현 황	신한금융지주(100%)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백만원)

[요약재무상태표]

구분	제28기 2023년12월말	제27기 2022년12월말
현금및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17,216	29,958
유가증권	336,333	237,444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4,685	3,807
파생상품자산	444	622
기타자산	44,982	41,594
유형자산	5,587	6,086
자산총계	409,246	319,511
차입부채	0	7
기타부채	134,031	88,512
부채총계	134,031	88,519
자본금	88,667	88,667
자본잉여금	59,980	59,980
자본조정	304	306
기타포괄손익누계액	-884	-837
이익잉여금(결손금)	127,149	82,877
자본총계	275,216	230,993
부채와자본총계	409,246	319,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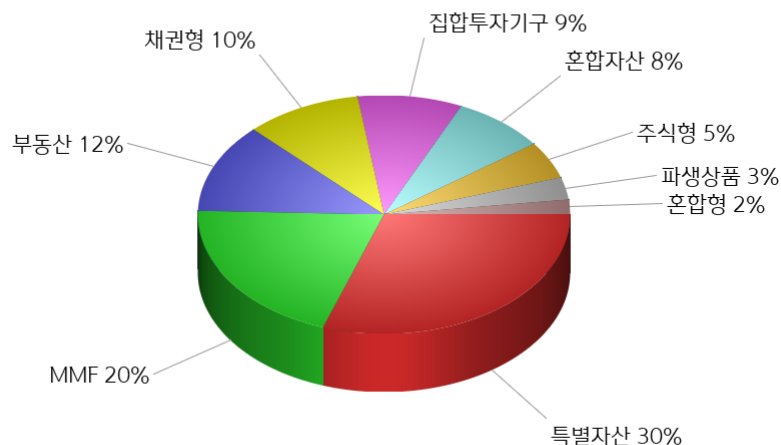
[요약손익계산서]

구분	제28기 (23.01.01- 23.12.31)	제27기 (22.01.01- 22.12.31)
영업수익	171,145	174,242
영업비용	103,758	120,886
영업이익(손실)	67,387	53,356
영업외수익	949	289
영업외비용	608	1,504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 사업이익	67,727	52,141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 용	16,456	15,077
계속사업이익(손실)	51,272	37,064
중단사업이익(손실)		
당기순이익(손실)	51,272	37,064

라. 운용자산 규모 (2024.04.30 현재 / 단위 : 억원)(일임자산제외)

구분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MMF	총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집합투자 기구	파생상품					
수탁고	28,626	13,030	53,925	47,500	15,282	64,652	163,076	43,293	108,344	537,729

유형별 운용자산 규모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업자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한국씨티은행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0 (신문로2가) (대표전화 : 02-3455-2114)
인 터 넷 홈 페이지	www.citibank.co.kr

2)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 ①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계약, 투자설명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 투자설명서가 법령·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 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 수익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대한 손해배상책

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신한펀드파트너스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18,19,20층 (대표전화 : 2180-0400)
인터넷 홈페이지	www.shinhanfundpartners.com

2)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 소	연락처	인터넷 홈페이지
한국자산평가	서울 종로구 율곡로 88	02-399-3350	www.koreaap.com
나이스피앤아이(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02-398-3900	www.nicepni.co.kr
KIS자산평가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02-3215-1400	www.bond.co.kr
에프앤자산평가(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29	02-721-5300	www.fnpricing.com

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에프앤자산평가(주)의 경우 국내채권(CD, CP)만 평가 및 제공함)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모 투자신탁 수익자총회가 개최되어 그 수익자 총회의 목적이 자 투자신탁 수익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 투자신탁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합니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 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 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221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 일부터 6개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 (단, 합병, 분할, 분할합병 및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법 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투자신탁의 합병(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및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 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신탁재산 명세서 /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계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는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투자자의 주소지 또는 투자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계약 등 투자신탁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투자자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서, 상품의 구조가 복잡하고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인인 일반투자자는 판매회사에 판매과정을 녹취한 파일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이하 “청약등”이라 한다)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하 “숙려기간”이라 한다)에 대해 안내받아야 합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서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요청을 하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에 따른 금전 등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는 투자권유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의 청약 등을 한 투자자에게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3) 법 제87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교부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로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 각 호의 사항 등.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동 시행령 제3항 제2호 및 제7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점

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교부됩니다.

- 1)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4) 법 제247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 5) 법 시행령 제270조 제2항 각호의 사항 등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계약에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법시행령 제217조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7.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9.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상기 2호 및 6호에 해당되는 경우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해진대로 다음과 같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① 다음 각 호외의 사유로 집합투자계약 제42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집합투자계약 제37조와는 별도로 다음의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 또는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법령·신탁계약서에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중대한 손실 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3.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집합투자업자 변경에 따른 수익자총회 결의의 경우 집합투자업자 변경 수익자총회 결의일 익영업일의 투자신탁 순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180일 분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산으로 지급한 비용(자문료, 시스템개발비 등)을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

업자가 수익자 총회 결의일로부터 제5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에 의한 신탁업자 변경에 따른 수익자총회 결의의 경우 신탁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신탁업자의 계산으로 지급한 비용(자문료, 시스템개발비 등)을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 총회 결의일로부터 제5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신탁업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제2항 내지 제3항 적용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집합투자계약 제35조 제4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는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 (www.shinhanfund.com)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3.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조정,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및 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법 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 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 · 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1)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상권 · 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 · 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 · 변경

4)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11.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 · 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 원 이상을 소유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하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다음 내용을 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 기록 유지해야 합니다.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	집합투자업자인 신한자산운용(주)의 중개회사 선정기준입니다. 분기(필요시 변경가능)별로 내부 중개기관위원회(Broker Committee)에서 아래의 선정기준에 따라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 리서치의 양과 질 - 새로운 섹터 아이디어 또는 새로운 업무범위 - 거래 실행력 - 투자자의 최우선 가치 - 비용/수수료 구조 - 거래체결의 질과 완벽함 - 신용과 평판의 질 - 중개기관과 집합투자업자의 IT/통신 연결 - 중개기관의 내부 준법감시 절차 선택된 중개회사들의 거래량 분배는 내부 기준을 바탕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배분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금융투자업규정 제7-1조의2 제2항 7호에 해당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고유재산 투자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합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ELS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계되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단위형	투자신탁의 모집시기(판매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 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 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신탁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 준 대가로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과보수	현행 법은 불특정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펀드(공모펀드)의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 보수(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혹은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약관(계약)에 따라 성과보수의 수취가 가능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성과보수가 있는 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과 성과보수가 없는 공모펀드를 함께 운용함에 따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자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판매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투자자가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간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익자총회	신탁계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을 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 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은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며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
환매조건부 매수/매도	환매조건부 매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요약 설명서 |

신한 지수연계 증권 투자신탁 KSE-24호 [ELS-파생형]

- 모집기간 : [청약철회권 적용 고객 : 2024.05.20(월) ~ 2024.05.28(화)] [청약철회권 미적용 동의 고객 : 2024.05.29(수) ~ 2024.05.31(금)]
- 실 정 일 : 2024.06.10(월) • 최초기초자산가격 결정일 : 2024.06.10(월) 종가 • 투자자 숙려기간 : 모집기간 중 투자자가 청약을 신청한 날(불포함)부터 2영업일
- ※ 투자자 숙려제도 대상고객의 경우 숙려기간(2영업일) 이후, 최종투자여부를 확정하여야 가입이 되며, 최종투자여부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가입이 취소됩니다.
- ※ 본 상품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서 제공일 또는 계약제결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권 미적용에 동의(즉시운용에 동의)한 고객에게는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최대손실가능 금액	예금자 보호 대상 여부	투자자 숙려제도 대상 여부	상품만기
원금전액 손실	비대상	투자자 숙려제도 대상	3년 1개월 만기

투자자산 요약

손익률	기초자산	상품구조
최대 연 5.80% 수준 (수익조건 충족시, 투자원금기준, 세전) ※조기상환 및 만기상환 조건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원금손실발생 (-35% ~ -100% 수준)	 KOSPI200  S&P500  EUROSTOXX50	85-85-85-80-75-65 6개월단위 Step-down 조기상환형

펀드개요

펀드명	신한 지수연계 증권 투자신탁 KSE-24호 [ELS-파생형]
투자형태	증권형[ELS-파생형]
파생결합증권발행사 ^(주1)	KB증권 (AA+), 미래에셋증권 (AA), 유안타증권 (AA-), 교보증권 (AA-) • 신용평가 기관명 : NICE신용평가 • 적용일 : KB증권 (2024.04.09), 미래에셋증권 (2024.01.05), 유안타증권 (2023.11.30), 교보증권 (2024.03.26) • 파생결합증권 발행사 신용사건 발생시 투자원금 전부 또는 일부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파생결합증권 발행사 신용등급은 자료 작성일 현재 국내신용평가사 기준이며, 향후 신용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발행사의 투자적격 신용등급은 AAA / AA, A, BBB 각 +, 0, - 순으로 구분됩니다. • 신용등급 하락에 따라 투자원금의 100%까지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결합증권투자기간 ^(주2)	3년 1개월 (단, 6개월 단위로 자동조기상환 조건 충족 시 자동조기상환)
파생결합증권기초자산	KOSPI200, S&P500, EUROSTOXX50
운용대상	파생결합증권 : 90% 이상
환매수수료	• 환매금액의 7%(초기 6개월 미만), 환매금액의 5%(6개월 이후) • 환매수수료는 전액 투자신탁재산에 편입
환매방법	환매는 환매 청구일로부터 제 4영업일 기준가 적용, 제 5영업일에 지급 (17시 경과 후 제 5영업일 기준가 적용, 제 6영업일에 지급)
선취판매수수료	• A1 클래스 : 납입금액의 0.80% 이내 • A-e 클래스 : 납입금액의 0.60% 이내
총보수	• 초기 6개월 되는 날까지 - 총 보수 : 연 0.287%(집합투자업자 : 연 0.255%, 신탁업자 : 연 0.020%, 일반사무관리회사 : 연 0.012%) • 6개월 경과 후 - 총 보수 : 연 0.003%(집합투자업자 : 연 0.001%, 신탁업자 : 연 0.001%, 일반사무관리회사 : 연 0.001%) ※ 보수 · 수수료 외에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A-e클래스(온라인투자자 전용)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가 A1클래스보다 적어 비용이 그만큼 절감됩니다. 이에 따라 A-e, A1 모두 동일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A-e클래스의 수익률이 A1클래스의 수익률보다 절감된 비용수준만큼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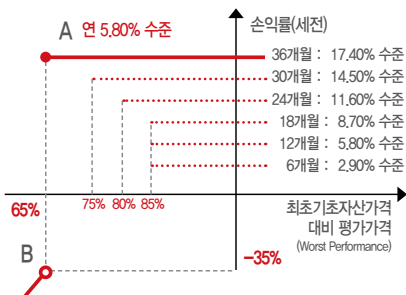
^(주1) 발행사 신용등급은 국내신용평가사 기준이며 향후 신용등급 변동이 가능합니다.

^(주2) 투자기간은 편입된 파생결합증권의 만기일을 의미합니다. 다만 집합투자계약상 신탁계약기간은 상환일이 불가피하게 연장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상기투자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보수 및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선취수수료율은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 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지게 됩니다. ※ 법률, 세무자문 등 기타 펀드 설정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신탁비용으로 지급됩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 관리비용 등 총 보수 이외에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중도환매 시 펀드의 안정적 수익구조와 잔존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며, 이로 인한 원금손실 및 투자신탁재산으로 편입된 파생결합증권의 중도매각에 따른 가격손실로 기초자산의 최대하락률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펀드구조

펀드 손익구조



- A : 자동조기상환 및 만기수익상환의 경우
- B : 자동조기상환 되지 않고, 만기수익상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최대 원금 손실률 : -100%)

펀드 평가일정

회차	손익여부	평가일	상환일	손익률(세전)	비고
1	6개월 수익상환	2024년 12월 05일 (목)	2024년 12월 10일 (화)	2.90% 수준	
2	12개월 수익상환	2025년 06월 04일 (수)	2025년 06월 10일 (화)	5.80% 수준	6/6 한국휴정(현충일)
3	18개월 수익상환	2025년 12월 05일 (금)	2025년 12월 10일 (수)	8.70% 수준	
4	24개월 수익상환	2026년 06월 05일 (금)	2026년 06월 10일 (수)	11.60% 수준	
5	30개월 수익상환	2026년 12월 07일 (월)	2026년 12월 10일 (목)	14.50% 수준	
만기	36개월 수익상환 손실상환	2027년 06월 07일(월)	2027년 06월 10일 (목)	17.40% 수준 -35%~-100% 수준	만기상환일

- ※ 수익률(세전)은 예상 수익률로서 실제 수익률과는 환매 수수료, 이자 지급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최초 기초자산가격 결정일,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만기평가일에 해당 기초자산의 거래소 한 곳이라도 영업일이 아닌 경우, 모든 기초자산의 거래소가 모두 영업일이 되는 날까지 순연. 이 경우 평가일이 순연됨에 따라 파생결합증권 대금지급일도 순연. 또한, 대금지급일이 신탁업자 및 해당 판매사 영업일이 아닌 경우 순연
- ※ 또한, 파생결합증권 대금지급일이 변경되는 경우 펀드의 상환일도 순연하여 변경함

※ 상기 수익률은 자동조기상환 및 만기수익상환 조건 충족시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가격 수준에 따른 예시수익률이며, 확정된 수익률은 아닙니다.



펀드특징

상환구분	손실여부	기간	상환조건	손익률(세전)
자동조기상환	수익상환	6개월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가격(종가)이 모두 최초 기초자산가격 대비 85% 이상 인 경우	2.90% 수준
		12개월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가격(종가)이 모두 최초 기초자산가격 대비 85% 이상 인 경우	5.80% 수준
		18개월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가격(종가)이 모두 최초 기초자산가격 대비 85% 이상 인 경우	8.70% 수준
		24개월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가격(종가)이 모두 최초 기초자산가격 대비 80% 이상 인 경우	11.60% 수준
		30개월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가격(종가)이 모두 최초 기초자산가격 대비 75% 이상 인 경우	14.50% 수준
만기상환	수익상환	36개월	(6) 만기평가일에 각 기초자산가격(종가)이 모두 최초 기초자산가격 대비 65% 이상 인 경우	17.40% 수준
	손실상환	36개월	(7)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 중 어느 한 기초자산이라도 기초자산가격(종가)이 최초 기초자산가격 대비 65% 미만 인 경우 → 원금손실 (원금 손실률 = <u>기초자산 중 기초자산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한 기초자산 (기준종목)의 기초자산가격 기준 하락률 수준으로 원금손실 발생</u>) (최대 원금 손실률 : -100%)	-35% ~ -100% 수준

- ※ 상기 자동조기상환 및 만기상환을 위한 기간은 최초 기초자산 가격 결정일로부터 매 기간별 해당일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노낙인 (No Knock-in) 스텝다운 구조 : 투자기간 동안 기초자산이 최초기초자산가격의 65% 미만인 날(Knock-In)과 상관없이, 만기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기초자산가격 대비 65% 이상이면 최대 17.40% 수준(연 5.80% 수준, 세전)의 수익률로 상환
- ※ 상기 수익률은 자동조기상환 및 만기수익상환 조건 충족시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가격 수준에 따른 예시수익률이며, 확정된 수익률은 아닙니다.
- ※ 최초 기초자산가격 결정일 또는 평가일은 해당 거래소 동시 영업일이 아닌 경우顺延됨 ※ 기초자산가격 기준 하락률 : {(만기 평가일 기초자산가격/최초 기초자산가격)-1}×100(%)
- ※ 원금은 선취판매수수료를 공제하기 전에 투자자가 입금한 금액을 말합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특히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수익률은 상환조건(조기 또는 만기) 등 충족시 지급될 수 있는 최대 수익률에 불과하며 발행회사가 상환조건이나 수익률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하므로 상환조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환매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안내문은 청약의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청약의 권유는 (예비·간이) 투자설명서에 따릅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합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판매사



운용사

